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2.12.24	개정 2010.12.31	개정 2017.12.28	개정 2023.12.28
개정 1994.06.29	개정 2003.12.11	개정 2011.12.28	개정 2018.08.22	
개정 1994.09.01	개정 2004.12.09	개정 2012.12.28	개정 2018.12.20	
개정 1995.02.17	개정 2005.12.28	개정 2013.12.27	개정 2019.12.27	
개정 1995.07.25	개정 2006.12.18	개정 2014.01.24	개정 2020.07.23	
개정 1996.06.28	개정 2007.08.30	개정 2014.12.23	개정 2020.12.24	
개정 1997.10.22	개정 2007.12.27	개정 2015.04.30	개정 2021.12.24	
개정 1998.12.05	개정 2008.12.29	개정 2015.12.18	개정 2022.05.13	
개정 1999.12.31	개정 2009.05.31	개정 2016.10.27	개정 2022.08.30	
개정 2000.12.26	개정 2009.12.30	개정 2016.12.21	개정 2022.12.29	
개정 2001.12.28	개정 2010.04.28	개정 2017.07.20	개정 2023.04.27	

[인사노무처 급여복지부 042-600-81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5., 2013.12.27, 2022.8.30>

- 1. "기본급"이라 함은 근속과 직급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2.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3. "직무가급"이라 함은 개인별 능력, 전문성, 직무성격, 근무환경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4. "성과급"이라 함은 개인별 성과와 단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5. "수당"이라 함은 제19조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6.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직무급, 직무가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말한다.
- 7. "월보수" 라 함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 8. "일할계산"이라 함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9. "퇴직" 이라 함은 면직, 해임 또는 파면 등으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10.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직무급, 직무가급, 일반성과급, 내부평가급 최저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직원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5, 1999.12.31, 2013.12.27, 2022.8.30>

- 1. 기본급
- 2. 직무급
- 3. 직무가급 : 직능가급, 직무환경가급, 선임가급, 공사감독가급, 현장정비책임가급
- 4. 성과급 : 일반성과급, 인센티브성과급 <개정 2016.10.27>
- 5. 수당 :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 야긴근무수당, 해외근무수당 <개정 2000.12.26, 2004.12.9, 2005.12.28>
- 6. 퇴직금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실적급 수당의 계산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지급일) 월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2.28>
- 제7조(보수의 선급) 직원의 보수는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 이전이라도 그 달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의 일할 계산) 직원의 보수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승호, 전보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월보수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23.4.27>
 - 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③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 제9조(휴직 및 결근자의 보수)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휴직 발령 다음 달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② 결근한 자(결근계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30일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 또는 결근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4.27>
- 제10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그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퇴직 당시의 기본급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12.5>
- 제11조(겸직자의 보수) 본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경우에는 겸직 직무 중 상위직급의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8.12.5>
- **제11조의 2(직무대리의 보수)**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직무대리 발령이 난 경우, 보수의 세부 산정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05., 2002.12.24., 2005.12.28>
- 제12조(보수의 감액)「인사규정」에 의하여 무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부서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은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13조(파견자의 보수)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하되 파견기관에서 보수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경우의 보수 결정 방법은 사장이 정한다.

제3장 기본급

제14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4.6.29, 1995.2.17, 1997.10.22, 1998.12.5, 1999.12.31, 2000.12.26, 2001.12.28, 2002.12.24, 2003.12.11, 2004.12.9, 2005.12.28, 2006.12.18, 2007.8.30, 2007.12.27, 2008.12.29., 2009.5.31, 2009.12.30, 2011.12.28, 2012.12.31, 2013.12.27, 2015.4.30, 2015.12.18, 2016.12.21, 2017.12.28, 2018.12.20, 2019.12.27, 2020.12.24, 2022.8.30., 2022.12.29., 2023.12.28.>

제15조(초임호봉) 직원의 직급별 초임호봉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8.12.5, 1999.12.31, 2001.12.28, 2007.8.30, 2015.4.30>

제15조의 2(삭 제) <2022.8.30.>

제4장 직무급 및 직무가급

- 제16조(직무급 및 직무가급) ① 직무급은 수행직무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세부운영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0>
 - ② 직무가급의 세부운영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0>

제5장 성과급

- 제17조(성과급의 종류) 성과급은 일반성과급과 인센티브성과급으로 한다. <신설 1998.12.5, 2013.12.27, 2016.10.27 >
- 제18조(성과급의 지급기준) 성과급은 "별표3"의 기준으로 전년도 평가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세부운영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5, 2002.12.24, 2003.12.11, 2007.12.27, 2016.10.27, 2017.12.28>

제6장 수 당

- **제19조(수당 지급기준)** ①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1994.6.29, 1995.2.17, 1999.12.31, 2003.12.11, 2004.12.09, 2009.12.30, 2011.12.28, 2013.12.27, 2018.12.20, 2019.12.27, 2022.5.13, 2022.8.30>
 - ② 제4조 제5호의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해외근무수당의 세부지급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7, 2022.8.30>

제7장 퇴직금

- 제20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제22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잔여근속월수는 12분의 1개월을 곱하여 월할 계산한다. <2022.8.30>
 - ② <삭제 2000.12.26>
 - ③ <삭제 2000.12.26>
- 제20조의 2(퇴직연금) ① 공사는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 ②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12.28>
-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하다. 세부산정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제22조(평균임금의 계산) 직원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직무급, 직무가급, 성과급, 제수당을 기초로 계산하되, 세부산정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5, 1999,12.31, 2013,12.27., 2022,8.30>

- 제23조(명예퇴직금) ①「인사규정」제35조에 해당하는 직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월 기본급에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0.12.31>
 - ② 제1항의 잔여 개월 수의 계산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는 1/2, 5년 초과 10년 까지는 1/4만을 인정한다. 단,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31>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24>
 - 가.「인사규정」제47조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 나.「인사규정」제27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라.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 마.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및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제8장 보 칙

제24조(단수처리) 직원의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5조의 2 직능급과 제15조의 4 성과급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임시조치) 제16조의 연차수당은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직급 이상 직원의 보수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연봉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급 조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주40시간 근무제 관련사항 및 반장수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 4 및 제20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의 "별표1-1"은 이 규정 시행 후 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0조(퇴직금 지급의 특례)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 별표4의 반장수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의 "별표 1-1" 직원 기초급표는 2011년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 별표1, 별표1-1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된 기본급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 별표1. 별표1-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 "별표1-1"를 적용받던 2014년 입사 직원의 기본급은 2015년 1월 1일부터 "별표1"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7.2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6년 6월 28일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규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복원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성과연봉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7.12.28>

- 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5조의4(성과급의 지급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8.23>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2.2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 "별표4"의 반장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 "별표4"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7.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 "별표4"의 공사감독수당은 2020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12.2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0조의 2(명예퇴직금) 제3항에 대한 사항은 개정일에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24>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5.13>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8.30>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직무급 및 직무가급)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29>

제14조(기본급) "별표1"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4.27>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2.28>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직무급 및 직무가급) "별표4"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직원 기본급표 <개정 1994.6.29, 1995.2.17, 1997.10.22, 1998.12.5, 1999.12.31, 2000.12.26, 2001.12.28, 2002.12.24, 2003.12.11, 2004.12.9, 2005.12.28, 2006.12.18, 2007.8.30, 2007.12.27, 2008.12.29, 2009.5.31, 2009.12.30, 2011.12.28, 2012.12.31, 2013.12.27., 2014.12.23, 2015.4.30,2015.12.18, 2016.12.21, 2017.12.28, 2018.12.20, 2019.12.27, 2020.12.24., 2022.8.30., 2022.12.29., 2023.12.28.>

(단위 : 원)

		г	1		1	ī	Г	T	Г	,	(단위 : 원)
호 봉	3급1	3급2	4급1	4급2	4급3	4급4	5급1	5급2	6급1	6급2	7급
45	5,376,220	5,246,680	4,958,630	4,874,750	4,806,790	4,706,130	4,564,940	4,457,690	4,391,920	4,354,680	3,972,790
44	5,323,920	5,194,370	4,908,070	4,824,170	4,756,220	4,655,610	4,514,350	4,407,200	4,341,430	4,304,250	3,924,700
43	5,271,590	5,142,070	4,857,540	4,773,640	4,705,700	4,605,050	4,463,800	4,356,650	4,290,970	4,253,810	3,876,600
42	5,219,270	5,089,740	4,806,950	4,723,090	4,655,140	4,554,570	4,413,230	4,306,150	4,240,470	4,203,350	3,828,560
41	5,167,010	5,037,430	4,756,380	4,672,480	4,604,530	4,504,050	4,362,650	4,255,620	4,189,990	4,152,900	3,780,470
40	5,114,610	4,985,130	4,705,820	4,621,920	4,554,010	4,453,510	4,312,060	4,205,090	4,139,510	4,102,450	3,732,400
39	5,062,330	4,932,810	4,655,320	4,571,420	4,503,500	4,403,020	4,261,510	4,154,580	4,089,050	4,051,970	3,684,330
38	5,010,030	4,880,550	4,604,720	4,520,830	4,452,910	4,352,510	4,210,930	4,104,060	4,038,570	4,001,530	3,636,230
37	4,957,650	4,828,230	4,554,160	4,470,280	4,402,360	4,301,980	4,160,350	4,053,560	3,988,090	3,951,080	3,588,160
36	4,905,370	4,775,930	4,503,580	4,419,730	4,351,840	4,251,420	4,109,750	4,003,040	3,937,600	3,900,630	3,540,080
35	4,853,020	4,723,590	4,453,030	4,369,160	4,301,250	4,200,920	4,059,160	3,952,520	3,887,130	3,850,170	3,491,990
34	4,800,760	4,671,290	4,402,440	4,318,580	4,250,700	4,150,420	4,008,620	3,902,020	3,836,650	3,799,700	3,443,890
33	4,748,420	4,619,000	4,351,900	4,267,980	4,200,120	4,099,850	3,958,060	3,851,500	3,786,170	3,749,240	3,395,850
32	4,696,120	4,566,650	4,301,340	4,217,450	4,149,620	4,049,360	3,907,440	3,800,980	3,735,660	3,698,830	3,347,750
31	4,643,810	4,514,430	4,250,750	4,166,850	4,099,030	3,998,830	3,856,890	3,750,450	3,685,220	3,648,350	3,299,690
30	4,591,470	4,462,070	4,200,190	4,116,300	4,048,490	3,948,330	3,806,310	3,699,940	3,634,740	3,597,870	3,251,650
29	4,539,180	4,409,790	4,149,660	4,065,750	3,997,940	3,897,810	3,755,680	3,649,390	3,584,270	3,547,440	3,203,530
28	4,486,910	4,357,510	4,099,090	4,015,200	3,947,370	3,847,280	3,705,150	3,598,910	3,533,800	3,496,970	3,155,440
27	4,434,610	4,305,170	4,048,460	3,964,590	3,896,740	3,796,740	3,654,570	3,548,410	3,483,300	3,446,520	3,107,320
26	4,382,320	4,252,880	3,997,870	3,913,990	3,846,170	3,746,250	3,604,020	3,497,890	3,432,850	3,396,130	3,059,190
25	4,329,970	4,200,600	3,947,270	3,863,360	3,795,590	3,695,670	3,553,410	3,447,360	3,382,290	3,345,620	3,011,070
24	4,277,650	4,148,300	3,896,680	3,812,790	3,745,040	3,645,150	3,502,850	3,396,820	3,331,800	3,295,130	2,962,150
23	4,225,350	4,096,060	3,846,100	3,762,200	3,694,410	3,594,610	3,452,280	3,346,330	3,281,300	3,244,640	2,913,270
22	4,173,030	4,043,720	3,795,500	3,711,590	3,643,850	3,544,110	3,401,720	3,295,820	3,230,790	3,194,160	2,864,370
21	4,119,900	3,990,560	3,744,930	3,661,020	3,593,280	3,493,610	3,351,150	3,245,330	3,180,270	3,143,650	2,815,410
20	4,066,710	3,937,420	3,694,320	3,610,430	3,542,710	3,443,040	3,300,580	3,193,890	3,128,920	3,092,310	2,766,490
19	4,013,550	3,884,220	3,642,860	3,558,970	3,491,230	3,391,650	3,249,140	3,142,480	3,077,610	3,041,010	2,717,610
18	3,960,360	3,831,070	3,591,400	3,507,550	3,439,800	3,340,260	3,197,710	3,091,110	3,026,200	2,989,680	2,668,670
17	3,907,180	3,777,940	3,539,980	3,456,070	3,388,360	3,288,890	3,146,310	3,039,720	2,974,840	2,938,300	2,619,720
16	3,854,070	3,724,750	3,488,510	3,404,640	3,336,960	3,237,500	3,094,840	2,988,360	2,923,450	2,886,980	2,570,800
15	3,800,870	3,671,620	3,437,100	3,353,200	3,285,510	3,186,110	3,043,450	2,936,950	2,872,110	2,835,670	2,521,910
14		3,618,480		3,301,690	3,233,990	3,134,700	2,992,000	2,885,600	2,820,730	2,784,310	2,473,010
13		3,565,310		3,250,290	3,182,610	3,083,320	2,940,620	2,834,230	2,769,420	2,732,960	2,424,070
12					3,131,170	3,031,980	2,889,160	2,782,810	2,718,040	2,681,580	2,375,980
11					3,079,700	2,980,570	2,837,800	2,731,470	2,666,690	2,630,310	2,327,880
10					3,028,310	2,929,160	2,786,320	2,680,060	2,615,280	2,578,960	2,286,240
9					2,976,830	2,877,780	2,734,890	2,628,690	2,563,970	2,527,640	2,244,710
8					2,925,380	2,826,430	2,683,500	2,578,190	2,513,430	2,477,140	2,203,140
7					2,873,930	2,775,030	2,632,040	2,527,590	2,462,930	2,426,660	2,167,230
6							2,580,580	2,483,970	2,419,310	2,383,010	2,131,380
5							2,529,150	2,440,280	2,375,640	2,339,400	2,095,510
4								2,396,620	2,331,970	2,295,770	2,057,150
3								2,352,920	2,294,300	2,258,090	2,024,050
2									2,256,640	2,220,460	1,990,960
1									2,218,970	2,182,820	1,957,900
_		<u> </u>	I		I	l		1	, ,	_ , ,	. ,

【별표 1-1】(삭 제) <신설 2009.5.31, 2009.12.30, 2011.12.28, 2012.12.31, 2013.12.27, 2014.12.23, 삭제 2015.4.3♡

【별표 2】<개정 2018.8.22>

직(등)급별 초임호봉표

직급	등급	기준호봉	비고		
3급	1	15			
2 日	2	13			
	1	15			
4급	2	13			
4 日	3	7			
	4	7	해당 직(등)급의 기준호봉으로 임용된 자		
5급 1		5			
5급 2		3			
6급 1		1			
6급 2		1			
7급		1			

성과급

	지급률			
기준급여	일반성과급	인센티브성과급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월 기본급	연 320%	연 250%	연 0% ~ 250%	

【별표 4】<개정 2022.8.30, 2023.12.28>

직무급 운영기준

(단위 : 원)

직무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책임급	7,257,000	7,137,000	7,017,000	
선임급	7,016,000	6,896,000	6,776,000	세부지급기준은
실무(중급)	6,501,000	6,381,000	6,261,000	시행세칙으로 정함
실무(초급)	6,043,000	6,043,000	6,043,000	

【별표 5】<개정 2014.12.23, 2018.12.20, 2019.12.27, 2020.7.23, 2022.5.13, 2022.8.30>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단위	지급률 또는 지급액	비고
연차수당	일당	통상임금 × (1/209) × 8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1.5/209)	세부지급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야간근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0.5/209)	